

# 제천시재난관리기금운용관리조례안

의안 번호	4/8
----------	-----

제출년월일 : 98. 4.  
제출자 : 제천시장

## 1. 제안이유

제천시에서 조성하는 재난관리기금의 운용·관리에 관하여 필  
요한 사항을 조례로 정하여 기금운용을 효율적으로 수행하  
기 위함

## 2. 주요골자

- 재난관리기금의 조성
  - 최근 3년동안의 지방세법에 의한 보통세의 수입결산액의 평균액의 1천분의 2에 해당하는 금액
- 제천시 재난관리기금계좌 설치 운용·관리
- 재난관리기금의 사용 용도
  - 제천시에서 소유·관리하는 재난위험시설의 안전진단 및 보수·보강
  - 제천시에서 소유·관리하는 중점관리시설 등에 대한 안전진단
  - 재난이 발생한 때 또는 재난발생의 위험이 높은 때에 인명 구조 및 피해시설의 응급복구 등 응급조치
- 기금관리를 위한 회계공무원 지정
  - 기금운용관 : 총무국장
  - 기금분임운용관 : 민방위재난관리과장
  - 기금출납원 : 재난관리계장

## 3. 관련법령

- 재난관리법 제56조 및 동법시행령 제55조

붙임 : 1. 제천시재난관리기금운용관리조례안  
2. 관계법규

# 제천시재난관리기금운용관리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재난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6조의 규정에 의하여 적립되는 제천시의 재난관리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의 효율적인 운용·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금의 조성) 기금은 다음 각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법 제56조의 규정에 의한 적립금
2. 기금의 운용 수익금
3. 기타 수입금 등

제3조(기금의 운용) 시장은 법 제56조의 규정에 의하여 적립되는 기금의 효율적인 운용을 위하여 회계년도마다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제4조(기금의 관리) ①시장은 기금의 관리를 위하여 제천시재난관리기금계좌를 설치하여야 한다.

②기금은 시금고의 이자율이 높은 저축상품에 예치·관리하여야 한다.

제5조(기금의 용도) ①기금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용도외에는 사용하지 못한다.

1. 재난관리법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0조제2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재난위험시설등(지방자치단체가 소유 또는 지정·관리하는 재난위험시설 등에 한한다)의 안전진단 및 보수·보강 등 정비
2. 영 제20조제2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중점관리대상시설 등(지방자치단체가 소유 또는 지정·관리하는 중점관리대상시설 등에 한한다)의 안전진단

3. 법 제35조 내지 제37조의 규정에 의한 대피 또는 퇴거명령을 이행하는 주민에 대하여 임대주택으로의 이주 지원

4. 재난이 발생한 때 또는 재난발생의 위험이 높은 때에 인명구조 및 피해시설의 응급복구 등 응급조치

5. 재난의 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연구용역

②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역안전대책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비용의 일부를 융자할 수 있다.

1. 영 제20조제2항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시설중 재난발생의 위험이 있는 민간소유의 시설로서 당해 소유자 또는 점유자가 경제적인 능력이 없어 안전진단 등을 못하는 경우

2. 제1항제3호의 규정에 의한 임대주택으로의 이주에 소요되는 비용을 당해 주민이 부담할 능력이 없는 경우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역안전대책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하는 경우에는 영 제11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6조(회계공무원) ① 시장은 기금을 효율적으로 운용·관리할 수 있도록 기금운용관, 기금분임운용관 및 기금출납원을 둔다.

② 기금운용관은 총무국장으로, 기금분임운용관은 민방위재난관리과장으로, 기금출납원은 재난관리계장으로 한다.

제7조(기금의 재무회계관리) ① 기금의 재무회계에 관하여는 제천시재무회계규칙을 준용한다.

② 기금운용관과 기금출납원은 기금을 적정히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대장을 비치하고 기금에 관한 증빙서류를 따로 보관하여야 한다.

제8조(결산 및 보고) ① 시장은 회계년도마다 출납폐쇄후 3월이내에 기금의 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금 결산보고서를 다음 다음 회계년도 개시 120일 전까지 시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관 계 법 규

## 【재난관리법】

### 제56조(재난관리기금의 적립)

- ① 지방자치단체는 재난관리에 소요되는 비용에 충당하기 위하여 매년 재난관리기금을 적립하여야 한다.
-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재난관리기금의 매년도 최저 적립액은 최근 3년동안의 지방세법에 의한 보통세의 세입 결산액의 평균액의 1천분의 2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한다.

## 【재난관리법시행령】

### 제55조(재난관리기금의 운용·관리)

- ①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은 법 제57조의 규정에 의한 재난관리기금을 관리하기 위하여 계좌를 설치하여야 한다.
- ② 이 영에서 규정한 것외에 재난관리기금의 운용·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